



금융감독원

보도자료

금융은 **통통**하게 소비자는 **행복**하게

보도	배포시	배포	2024.7.16. (화)	
담당부서	금융투자검사3국 검사1팀	책임자	국 장	김남태 (02-3145-7830)
		담당자	팀 장	이동영 (02-3145-7836)

고수익으로 현혹하며 개인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증권사 직원의 은밀한 제안에 유의하세요

■ 소비자경보 2024-24호

등급	주의 경고 위협
대상	금융소비자 일반

- 주요 내용 -

- 증권사 직원이 주식, 파생상품,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운용하여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면서 고객 등으로부터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.
- 하지만 불법 의도를 가진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 은밀하게 제안하고 자금거래가 증권사 직원 개인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므로,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만으로는 예방 및 적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.
- ➔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당 사례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투자 유의를 당부 드리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합니다.

[소비자 유의 사항]

- 1 고수익 보장 등으로 포장된 증권사 직원의 꾀에 넘어가지 마세요.
- 2 증권사 직원의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지 마세요.
- 3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거래 중이라면, 즉시 신고하세요.

I

현황

- 최근 몇 년간 PB 등 증권사 직원(이하 '사고자')이 고객 및 지인 등(이하 '피해자')에게 주식, 파생상품,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하면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.
- 대형사·소형사를 막론하고 다양한 증권사의 직원이 그 지위를 악용하여 사기 행각을 벌였고,
- 사고 금액이 많게는 50억원에 달하는 등 선량한 다수 금융 소비자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.

증권사 직원의 투자사기 행위 주요 사례

증권사	발견시기	사고내용	자금 모집 명목	사고금액
A	2016	고수익을 미끼로 사고자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 유도 후 사적 유용	선물·옵션 투자	48억원
B	2017		미상	14억원
C	2018		주식 및 선물·옵션 투자	1억원
D	2019		전환사채 투자	13억원
E	2021		발행어음 투자	50억원
F	2022		주식 투자	3억원
G	2023		직원 전용 상품 투자	44억원
H	2024		주식 투자	7억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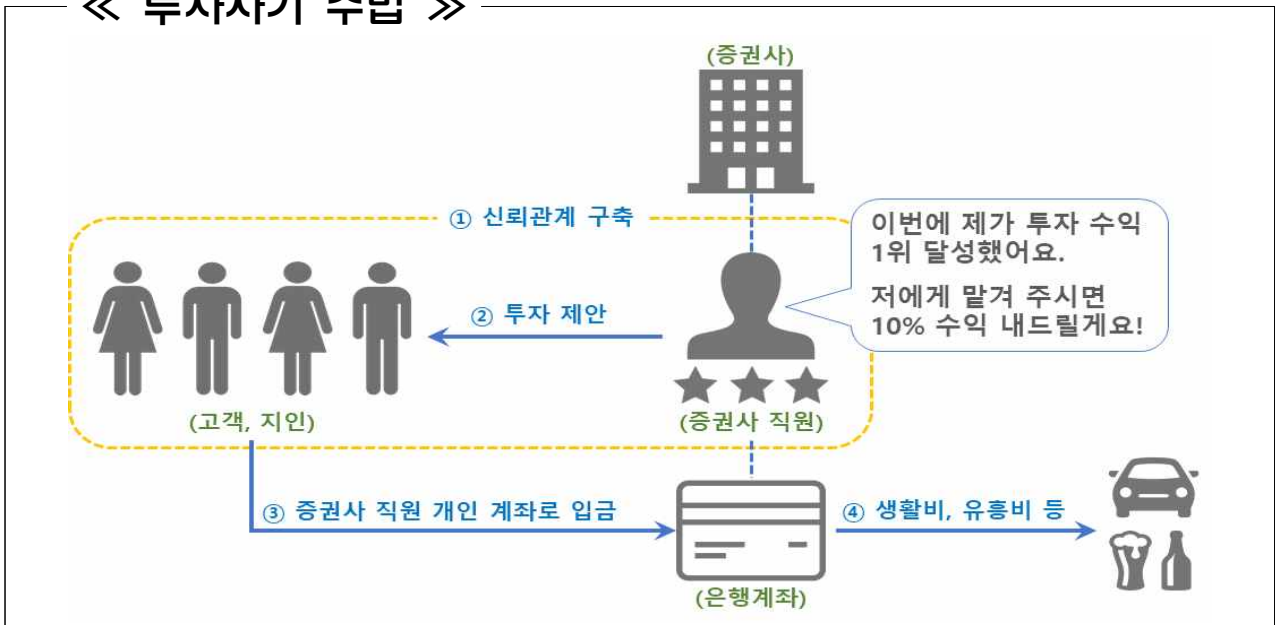
※ 증권사의 금융감독원 금융사고 보고 기준

II

사적 자금거래를 통한 사기 수법

- 사고자들은 공통적으로, ①피해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②고수익 상품에 투자해 주겠다고 현혹하고 ③사고자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후,
- ④해당 자금을 생활비, 유흥비 등으로 사적 유용, 탕진하였으며, 결국 그 손해는 오롯이 피해자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.

《 투자사기 수법 》



Ⅲ 소비자 유의 사항

① 고수의 보장 등으로 포장된 증권사 직원의 핏에 넘어가지 마세요.

- 그간의 사고사례에 따르면, 증권사 직원은 장기간의 자산관리, 거래관계 등으로 친분을 쌓은 후 범행을 시도하였고,
 - 이 과정에서 증권사 근무 경력, 투자 실적 등을 부풀리거나 재력을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습니다.
- 하지만 증권사 직원이 직무상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고, 설령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는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.
 - 따라서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 ‘저가 매수 기회’, ‘나만 아는 정보’ 등으로 치장하여 투자를 유도하더라도, 항상 투자 전 충분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.

② 증권사 직원의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지 마세요.

- 증권사의 모든 정상 거래는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, 증권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직원의 개인 계좌로 수납하지 않습니다.
 - 금융소비자께서는 금융거래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하고, 증권사 직원이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청한다면 거절해야 합니다.
- ※ 특히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, 금융소비자께서도 금융실명법 등 위반에 연루될 수 있고, 때에 따라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함께 처벌받을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③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거래 중이라면, 즉시 신고하세요.

- 이러한 사적 자금 거래는 불법적인 의도를 가진 증권사 직원이 평소 친분에 기초하여 은밀하게 투자를 제안하는 데다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토록 요구하므로,
 -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및 준법 교육만으로는 예방 및 적출에 한계가 있으며, 따라서 금융소비자의 신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.
- 금융소비자께서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사기로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혹여 현재 거래 중이시라면,
 -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, 신속하게 해당 증권사, 금융감독원 (☎1332) 또는 경찰(☎112)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